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었음.

고령친화우수제품의 경우 매년 다양한 제품이 지정되는 등 그 필요성과 효용이 인정되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의 경우 고령친화산업 현장에서 필요성과 효용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21.8월)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상 고령친화우수사업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한국보건사업진흥원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우수제품의 지정절차) ①제7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제품이 제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14조의2를 제14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를 “(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를 “우수제품”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우수제품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에 따라 우수제품이나 우수사업자로”를 “제8조에 따라 우수제품으로”로, “우수제품·우수사업자”를 “우수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분 후단 중 “할 수 있고, 우수사업자는 해당 사업시설, 그 상호 및 홍보 물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우수제품 지정업무”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 “(우수제품 등에 대한 지원)”을 “(우수제품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제품 등”을 “우수제품”으로, “구매 또는 우수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을 “구매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4조)의 제목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환수 절차)”를 “(우수제품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환수 절차)”로 한다.

별지 제4호, 제6호 서식을 삭제하고 제5호 서식을 제4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4.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우수제품 등의 지정절차) ①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제품 또는 사업자가 제7조제1항이나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이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	< 삭 제 > 제8조(우수제품의 지정절차) ①제7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제품이 제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①

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 표시) 제9조에 따라 우수제품이나 우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우수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은 해당 제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표시를 할 수 있고, 우수사업자는 해당 사업시설, 그 상호 및 홍보물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제품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우수제품의 표시) 제8조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은 해당 제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제품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3. (생 략)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우수제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 또는 우수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권유할 수 있다.</u> 1.~2. (생 략) <u>제14조(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환수 절차)</u>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u>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u>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우수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u> 1.~2. (현행과 같음) <u>제13조(우수제품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환수 절차)</u>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u>제14조(규제의 재검토)</u>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60